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6784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외교통일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건의 법률안을 외교통일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상정일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530	김기현의원 등 16인	2024. 11. 13	2025. 2. 26.
	8063	홍기원의원 등 17인	2025. 2. 11	2025. 9. 16.
	13579	김영배의원 등 10인	2025. 10. 14	2025. 11. 14.

나.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1. 26.)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2026. 1. 28.)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일교육 정의규정에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백히 밝힘(안 제2조제1호).

나.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

다.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해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라.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까지로 함(안 부칙 제3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통일을”을 “평화적 통일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립한다”를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립할”을 “수립·변경할”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과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대상기간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포함한 4년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u>통일을</u>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p> <p>2.·3. (생략)</p> <p>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p> <p>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수립한다</u>.</p> <p>② (생략)</p> <p>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제2조(정의) ----- -----.</p> <p>1. ----- ----- ----- -----<u>평화적 통일을</u>----- ----- -----.</p> <p>2.·3. (현행과 같음)</p> <p>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p> <p>① ----- ----- ----- -----<u>5년마다 수</u> <u>립·시행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수립·변경할</u>----- ----- -----<u>. 다만,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u> <u>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④ (생략)

<신설>

<신설>

④ (현행과 같음)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